
토론문

레 티 민 리

문화유산진흥연구원 / 베트남문화유산협회장

티모시 커티스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부장은 아태지역 및 동남아시아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현황과 전략, 목표 등 유익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이에 덧붙여 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와 관련한 최신 정보, 의견 및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남아 국가들은 지역 차원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겨왔다. 지난 20년간 경제발전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동남아시아는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난제에 직면해 왔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한 동남아 각국은 즉각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특히 베트남(2006~2010)과 인도네시아(2010~2014) 양국은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으로서 협약 강화에 기여해왔다.

동남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은 각국이 중시하는 정신적, 문화적 가치의 표출이자 여러 세대에 걸쳐 오늘날까지 전승된 옛 선조들의 사상과 정신의 재현으로 볼 수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다종다양한 양식과 표현으로 나타나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특별조치를 취했으며, 그 결과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지난 20년간 동남아시아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협약 이행을 위한 수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다. 무엇보다 각 공동체와 국가가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점이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긴밀한 협력 체제를 형성하여

거대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은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중요한 협력관계를 지속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동남아지역은 경제개발, 현대화, 세계화, 관광산업의 가파른 성장 및 개발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환경, 생활여건, 육구의 변화 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보호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목적을 균형 있게 추구하기 위해 각국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현황에 대해 발표해주신 팀 커티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몇 가지 최신 정보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의 문화유산법은 2001년에 공표되어 2002년에 시행되었으며,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가이드라인과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2009년에 개정되었다. 유네스코는 동 법의 관련 조항들이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준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문화유산법의 시행과 더불어 베트남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조치와 체계 등 관련 분야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고, 보호 조치의 이행에 있어 각 부문에 부여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무형문화유산법은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유산이며 사회적 관계를 끊임없이 촉진하는 역동적인 체계 속에 존재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가지며 개별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공동체 유산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세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은 전통지식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문화유산의 다양한 측면을 확인하고 기록하며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규 및 비정규 교육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진흥하며 보급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개발도상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전문기술, 정보, 인적자원 및 재원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남아의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들을 제안한다.

먼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경험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역내 관련 기관들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역량을 파악해야 한다. 분산을 막기 위해 중심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 긴급한 사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남아 국가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아태지역 국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내에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센터를 설립하고 국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향후 역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내실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조속히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각 회원국이 임무를 분담하여 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토론문

헤수스 페랄타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자문관

무형문화유산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소멸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은 지루한 작업일 수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일은 더욱 힘겨운 일이다. 어떻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는 시점은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변화가 뒤따르는 방향과 방식을 바꾸는 작업을 시도조차 할 수 있을까?

적어도 두 가지 요소, 즉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와 관습을 이행하는 사회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화 주체, 예를 들어 정부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그 조치가 사회 운영방식과 양립할 수 없다면, 어떠한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변화의 종류, 그 정도와 방향 그리고 사회참여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관습을 실행하는 사회집단 그 자체이다. 사회와의 공존 가능성 여부가 무형문화유산 생존의 핵심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은 거부될 것이다.

사회 조직 구조와 운영에 대한 상세한 지식은 관습을 실행하는 집단에 속한 개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친숙한 것이어야 한다. 문화 다양성이 한 사회를 다른 사회와 분명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접근법은 사회의 문화적 독창성에 기초하여 차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실행계획이 아닌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야 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 관습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한다.
- 핵심분야에서 살아있는 전통 학교(HSLT : Schools for Living Tradition)를 설립함으로써 전통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를 양성한다.
- 실연 행사와 기회를 창출한다.
- 성인과 청소년들을 위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참여와 관심을 드높인다.
- 연행자와 변화의 주체 인적자원 등 기타 요소를 존중하고 인정한다.
- 민간영역과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사무소를 프로그램에 참가시킨다.
- 무형문화유산 교육과정을 학교 교과과정에 상시 개설하도록 교육부를 참가시킨다.
- 공동체의 명망있고 헌신적인 인사들을 프로그램 추진에 참여시킨다.
- 지속적인 문화 연구조사와 지역 전문가 및 연구자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 무형문화유산의 사회적 연행을 지속하고 가능한 많이 개발한다.

이는 정부와 NGO, 지역 공동체가 자신들의 고유한 무형문화유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존하며 증진하도록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개인, 단체, 기관 및 조직이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관리, 보존, 보호 및 홍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필리핀 북부 이푸가오족의 후드후드(hudhud) 보호 활동에서 얻은 경험은 보호활동을 위한 기존의 방법론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였다. 즉 방법론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끊임없이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효율적인 보호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많은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계획 수정,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 결국 8년이 지난 뒤에야, 이푸가오족 스스로가 보호 조치를 제도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필리핀 남부 마라나오족의 대서사 다란젠(Darangen) 보호 작업에 착수했을 때에는 필리핀 북부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마라나오족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라나오족과 이푸가오족이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다. 여러 제약 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무형문화유산 요소 그 자체가 이유였다. 이푸가오족의 후드후드는 집단 참여방식으로 전승되어, 부족민들은 네 가지의 사회적 의례를 일생 동안 접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암기한다. 하지만 마라나오족의 다란젠 전승은 보유자와 다수의 견습생이 있는 일종의 길드 형태로 이루어지며, 연행은 단 한 명의 연행자가 노래에 참여하지 않는 수행원의 도움을 받아 다란젠을 읊는다. 이 경우 이푸가오족의 후드후드 보호활동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다란젠 서사시는 암송하는 단 한 사람에 의해 연행되지만, 암송 그 자체는 수행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활동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과정 내에 또 다른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로, 둘을 서로 분리할 수 없다.

필리핀에만 주요 인종 언어학적 집단이 80개가 넘고, 하위 집단은 수도 없이 많다. 동아시아 사회집단의 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보호 조치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모듈로써 일괄 적용할 수는 없다. 특정 집단에 맞게 수정된 보호 전략이라면 맞춤형 조치만이 지니는 분명한 특성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라는 광범위한 지역 내에서도 일반화된 보호 방침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속에서 핵심적인 문화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사한 핵심 문화 영역 간의 보호 전략 교류는 회원국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근접 지역의 경험은 특히 구조적, 조직적으로 비슷한 핵심 문화 영역에서 보호 조치 수립을 용이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화된 전략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 간의 정보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로는 예를 들어, 일반적인 친족 제도, 인구 규모, 민간부문의 성격, 인적자원의 존재여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관련 기관의 종류와 개수, 정치 및 지도 체제와 종교의 구조 등이 있다.

구조적으로 유사한 핵심 영역간의 정보교류와 더불어, 특수한 사회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노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정보보급 분야는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센터가 담당하며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통해 회원국에 도움이 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사한 핵심 문화 영역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숙련된 인적자원 간의 전문지식 교류 또한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